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 10.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상 자연유산	명 칭			종 류	
소 재 지	(전화번호:)				
공 개 제 한 사 항	제한사유				
	제한기간				
	제한지역				
출 입 허 가 신 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자	
	출입지역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입목적이 학술연구인 경우에는 학술연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출입목적이 관리실태 조사인 경우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출입목적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활용인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